

1. 지원대상 사업

구 분	내 용
한민족정체성 유지 강화 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외동포 문화단체 활동 ○ 국내외 재외동포 언론단체 활동 ○ 재외동포 차세대단체 활동 ○ 한글학교 교사 현지연수 ○ 한글학교 맞춤형지원 ○ 전통문화용품지원
한인단체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활동 ○ 재외동포 경제단체 활동 ○ 코리아타운 활성화 사업 ○ 재외동포 관련 조사연구 사업 ○ 재외동포 공공외교 활동

2. 사업별 지원방향

가. 공통사항

1) 지원 기준

- 지원액은 총소요액의 최대 50%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함
-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결정
 - 사업의 중요도, 사업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, 예산 명세의 적절성
 - 계속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성과 및 결과보고 충실도를 평가
 - 동일단체가 다수 수요 제출 시, 중점사업을 우선하여 검토

2) 지원 불가 사항 및 제외 가능한 경우

- 지원 불가 사항
 - 공관을 통하지 않고 우리 재단으로 개별 신청하는 사업. 단, 국내 재외동포 관련 단체의 경우는 예외로 함
 - 분쟁 중이거나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단체
 - 전년도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단체
 - 영리목적의 사업, 종교 관련 활동 사업, 국내 정치 관련 사업, 채무상환 목적
 - 사업(행사)이 종료된 이후 지원 요청하는 사업
 - 장학금, 기부금(품) 지원하는 사업
 - 재단 승인없이 사업계획 임의 변경하거나 예산을 이월집행한 경우
 - 재단 사전 승인없이 지원금 결과보고서 미제출 단체 등

-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
 - 자조능력으로 가능한 사업(소식지, 주소록, 달력 제작 등)
 - 단체회원 간 단순 친목도모성 소규모 모임, 연말연시 모임 차원의 일회성 사업
 - 단체 운영 등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비로 집행하는 사업
 - 제출서류(사업계획서, 결과보고서 등)를 충실하게 제출하지 않은 단체
 - 지원 요청액이 USD1,500 미만인 사업 등
- 기타 사항
 - 단체가 연간 시행하는 사업들을 동일 신청건으로 함께 신청하지 않을 것
 - 지원신청 시 사업 목적, 기대효과 중심으로만 작성하는 경우가 있음. 가장 중요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함
 - 전년도 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지원제외함. 단, 동일 단체가 심의 대상 지원사업 이외 여타 지원사업의 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, 해당 일부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유보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재심의함

※ 별도 수요조사 시행 예정 사업은 아래와 같음

: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,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, 재일민단 지원,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, 조선족학교 교육기자재 지원사업, 차세대 해외입양동포 지원

나. 지원방향 및 지원불가 대상

- “ 2020년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” 을 참조, 사업별 중점지원 분야에 부합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함

지원대상 사업	지원방향 및 규모	지원불가 대상
(1)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활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(행사) 내용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, 아래 지원방향에 부합하는 신규/계속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 예정 - (동포사회 화합 및 단결) 동포사회 전반의 화합과 단결에 기여하는 사업 - (차세대 동포 참여) 차세대 동포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 및 모국과의 유대감을 갖도록 유도하는 사업 - (소외동포 지원) 동포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업 - (우호증진) 거주국 국민 또는 여 	<공통사항> 적용

지원대상 사업	지원방향 및 규모	지원불가 대상
	<p>타 민족과의 우호 증진 사업</p> <p>- (단체 역량 강화) 조직 운영, 회계 투명성 제고, 자원 조달 등 관련 단체간 경험 공유 및 모범사례 발굴·확산을 위한 사업</p> <p>※ 단순 친목성 체육대회는 지원을 지양하되, 지역사회와 연계·연합되는 경우나 각 지역의 한인회가 추진하는 유일 사업인 경우에는 지원 검토 가능</p>	
(2) 재외동포 차세대 단체 활동	<p>○ 차세대 동포들의 역량강화 및 주류사회 진출 지원</p> <p>○ 차세대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류사업</p> <p>※ 차세대 해외입양동포 지원사업 수요조사 추후 별도 시행 예정</p>	
(3) 재외동포 경제 단체 활동	<p>○ 동포경제인·단체 간 지역별 네트워킹 사업</p> <p>○ 재외동포 경제단체가 주관하는 동포사회 주요사업 등</p>	
(4) 재외동포 문화단체 활동	<p>○ 단체의 개별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단체 1사업 지원</p> <p>○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재외동포 문화예술단체의 시행사업(우선순)</p> <p>① 한민족 정체성강화를 위한 문화예술분야 육성사업</p> <p>② 거주국 주류사회 대상 한민족 전통문화 홍보 및 공공외교 활동</p> <p>③ 거주국 주류사회 또는 타민족 커뮤니티와의 문화예술 교류활동</p> <p>④ 기타 ①~③ 내용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및 공관 추천사업</p>	<p><공통사항> 적용</p> <p>○ 기타 지원 불가 사항</p> <p>- 독주(독창) 등 개인공연 등</p> <p>- 문화원·교육원 등 타 부처(기관)에서 지원을 받거나 한국에 본부를 둔 단체(사업)</p> <p>- 단체 연중사업</p> <p>※ 단, ① 한민족 정체성강화를 위한 문화예술분야 육성사업에 해당하는 강좌, 강습, 초청강연 등의 프로그램은 예외로 함.</p>
(5) 재외동포 관련 조사연구 활동	<p>○ 국내외 재외동포 연구단체의 동포사회 실태조사 등 관련 자료의 기록·보관 사업</p> <p>○ 동포사회 현안 연구·논의를 위한 학술회의 개최 등 계기성 프로젝트 사업</p>	<p><공통사항> 적용</p> <p>○ 기타 지원 불가 사항</p> <p>- 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는 자체 학회지 및 학술지 발간사업</p>
(6) 국내외 재외	<p>○ 모국어 상실이 큰 국외지역의</p>	<p><공통사항> 적용</p>

지원대상 사업	지원방향 및 규모	지원불가 대상
<p>동포 언론단체 활동</p>	<p>한글신문 발행 관련 사업(해외) ※ 중국, 일본, 러시아·CIS지역 우선 검토 ○ 재외동포언론인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(국내)</p>	<p>○ 기타 지원 불가 사항 - 동포언론단체 자조역량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(소식지 발간 등) - 일회성 행사 ※ 단, 재외동포 언론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(국내)은 지원 가능 -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 없는 단순 단체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</p>
<p>(7) 한글학교 교사 현지 연수</p>	<p>○ 한글학교협의회 주최 교사연수 지원 - 파견강사 필요시, 전문분야 및 예산(숙박, 강연료 등) 반드시 포함 - 한글학교협의회 부재 지역의 경우, 한글학교 연합 연수 ○ 한글학교 교사 및 운영진 역량 제고를 위한 교장단 워크샵, 연수 등 ○ 기타 교사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및 워크샵 프로그램 등</p>	<p><공통사항> 적용 ○ 기타 지원 불가 사항 - 국내 타 기관(정부 및 공공기관) 과의 중복 지원사업 - 한국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글학교 교사연수 - 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는 자체 학회지 및 학술지 발간사업</p>
<p>(8) 한글학교 맞춤형 지원</p>	<p>○ 학교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학생 대상 프로그램 ○ 대륙별,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학생 대상 프로그램 - 청소년 리더쉽 교육, 졸업생 초청 행사, 멘토링 행사 등 ○ 한인 정체성 함양 및 교육 관련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등</p>	<p>○ 기타 지원 불가 사항 - 한글학교 자체예산으로 시행 가능한 일반적 수업활동 등 (예시) 체험학습, 성탄절 행사, 부활절 행사, 종강식, 수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특별활동 등</p>
<p>(9) 전통문화용품 지원</p>	<p>○ 한글학교 관련 민족문화 유지·전승 활동 지원 ○ 문화예술을 통한 세대간 교류 촉진 지원 ○ 전통악기, 전통의상, 민속놀이 용품 등 전통문화용품으로 포함될 수 있는 품목 지원</p>	<p><공통사항> 적용 ○ 기타 지원 불가 사항 - 지원제외품목 : 일회성, 발송 시 파손위험 물품 등</p>
<p>(10) 코리아타운 활성화 지원</p>	<p>○ 코리아타운 환경개선 사업 - 표지판 및 상징물 설치사업 - 거리정비 및 치안개선 사업 (가로등 및 CCTV 설치 사업) ○ 코리아타운 홍보 표준화 사업 - 한국문화의 올바른 전파를 위한 표준화 작업(한국 전통음식 표기법, 조리법 등 표준화 사업과 코</p>	<p><공통사항> 적용 ○ 기타 지원 불가 사항 - 주재국 인허가 불가능 사업 - 타민족과의 갈등 및 분쟁 소지 사업</p>

지원대상 사업	지원방향 및 규모	지원불가 대상
	<p>리아타운 정보 및 안내서 등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코리아타운 발전을 위한 주재국 관할 관청과의 공동 협력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코리아타운 활성화를 위한 상설 협력체 운영 - 거리명, 구역명을 '코리아타운 (가칭)으로 공식 행정 등록하는 사업 	
(11) 재외동포 공공외교 활동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외동포 공공외교 기여 활동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주재국 정부 및 타민족 커뮤니티와의 교류 사업 ○ 재외동포 정치력 신장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외동포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참여 활동 사업 - 한인 정치인 육성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- 동포사회 풀뿌리 운동 지원 - 지역 정치인 및 양당 후보 초청 정책 포럼 ※ 복수 정당, 대다수 후보자들을 초청, 강연하는 경우가 아닌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 지원만을 위한 사업은 지원제외 ※ '재외동포 정치력 신장 지원' 에서 '재외동포 공공외교 활동 지원'으로 사업명 변경 	<공통사항> 적용

3. 사업별 제출서류 및 담당부서(연락처)

지원대상 사업	제출서류	담당부서(연락처)
(1) 교류증진 및 권익 신장 활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금 신청서(온라인 양식 입력) ○ 사업계획서(온라인 양식 입력) ○ 수지예산서(온라인 양식 입력) ○ 단체현황조사서(온라인 양식 입력) ※ 붙임 : 정관, 단체연혁, 임원현황, 사업 및 활동실적 등 단체소개서, 법인(단체) 등록증(등록단체인 경우 제출) ○ 기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(요청 시 제출) 	<동포단체지원부> 김보라 대리 82-64-786-0235 bora6317@okf.or.kr
(2) 재외동포 문화단체 활동		<연구소통부> 김나영 대리 82-64-786-0242 nykim@okf.or.kr
(3) 재외동포 차세대 단체 활동		<차세대사업부> 한지원 과장 82-64-786-0272 jwhan@okf.or.kr
(4) 재외동포 경제단체 활동		<한상사업부> 김주동 과장 82-64-786-0283 joo@okf.or.kr
(5) 재외동포 관련 조사 연구 활동		<연구소통부> 고은아 직원 82-64-786-0245 eunako@okf.or.kr
(6) 국내외 재외동포 언론단체 활동		<연구소통부> 서준혁 직원 82-64-786-0248 seojun@okf.or.kr
(7) 한글학교 교사 현지 연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금 신청서(온라인 양식 입력) ○ 사업계획서(온라인 양식 입력) ※ 붙임 : 구체적인 사업계획서(프로그램) ○ 수지예산서(온라인 양식 입력) ○ 한글학교 교사연수 주관단체 현황조사서(온라인 양식 입력) ※ 붙임 : 안내책자, 정관, 단체연혁, 회원명부, 활동실적, 단체소속 한글학교 커리큘럼, 사용교재 목록 등 ○ 기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(요청 시 제출) 	<교육사업부> 백준 대리 82-64-786-0262 jun@okf.or.kr
(8) 한글학교 맞춤형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금 신청서(온라인 양식 입력) ○ 사업계획서(온라인 양식 입력) ○ 수지예산서(온라인 양식 입력) ○ 단체현황조사서(온라인 양식 입력) ※ 붙임 : 안내책자, 정관, 단체연혁, 회원명부, 활동실적, 단체소속 한글학교 커리큘럼, 사용교재 목록 등 ○ 참고자료(자유 양식) ※ 붙임 : 맞춤형 지원 활동에 참고되는 활동실적, 프로그램 등 	<교육사업부> 박귀식 직원 82-64-786-0267 kspark@okf.or.kr

지원대상 사업	제출서류	담당부서(연락처)
	○ 기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(요청 시 제출)	
(9) 전통문화용품 지원	○ 전통문화용품 지원신청서(온라인 양식 입력) ○ 단체현황조사서(온라인 양식 입력) ※ 붙임 : 정관, 단체연혁, 임원현황, 사업 및 활동실적 등 단체소개서 ○ 기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(요청 시 제출)	<연구소통부> 서준혁 직원 82-64-786-0248 seojun@okf.or.kr
(10) 코리아타운 활성화 지원	○ 지원금 신청서(온라인 양식 입력) ○ 사업계획서(온라인 양식 입력) ※ 붙임 · 코리아타운 현황 및 설명자료, 사진 · 설계 또는 구체 시공 계획서 등 공사후 조감도 · 자금조달 등 예산확보 구체 계획(약정자가 있는 경우 약정서 사본) · 사업추진체(추진위원회(가칭)) 구성 내용 등 ○ 수지예산서(온라인 양식 입력) ○ 단체현황조사서(온라인 양식 입력) ※ 붙임 : 정관, 단체연혁, 임원현황, 사업 및 활동실적 등 단체소개서 ○ 기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(요청 시 제출)	<동포단체지원부> 강서희 직원 82-64-786-0237 shkang@okf.or.kr
(11) 재외동포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	○ 지원금 신청서(온라인 양식 입력) ○ 사업계획서(온라인 양식 입력) ○ 수지예산서(온라인 양식 입력) ○ 단체현황조사서(온라인 양식 입력) ※ 붙임 : 정관, 단체연혁, 임원현황, 사업 및 활동실적 등 단체소개서 ○ 기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(요청 시 제출)	<동포단체지원부> 석정민 과장 82-2-3415-0142 jmin@okf.or.kr

4. 온라인 시스템 이용절차(단체) : www.Korean.net

구분	시스템 이용절차	수요조사 일정 <한국시간>
단체 신청	ID/PW 로그인 ⇒ 재단사업 ⇒ 지원사업 ⇒ 사업 및 신청서 선택 ⇒ 신청서 작성 ⇒ 저장(제출기한내 수정 가능) 또는 제출(제출 후 수정 불가능) ⇒ 신청서(붙임자료 포함) 공관제출(작성한 신청서를 인쇄, 서명하여 제출) ※ ID/PW : www.korean.net ⇒ 개인회원가입 ⇒ 단체회원가입 ⇒ 재단승인 (2일이내 메일 통보) ※ 기 가입단체는 사용중인 ID/PW 사용 ※ 한글학교 및 한글학교협의회는 반드시 재단 기 제공 ID/PW 사용	2019.11.20.(수) ~ 2020.01.08.(수) <약 50일>

※ 상세내용은 붙임. 온라인시스템 이용방법(단체) 참조

※ 온라인 지원신청 시스템 문의

- 전화 : +82-2-3415-0187, +82-64-786-0297 <한국시간 09:00~18:00>

- 이메일 : pms01@okf.or.kr

5. 정기 수요조사 지원 절차

동포 단체	신청서 작성	해당사업 지원신청서 온라인 작성(http://www.korean.net)
	신청서 제출 (수요조사 기간)	신청서 출력(붙임자료 포함) 후 단체장 서명하여 거주국 관할 공관에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능한 스캔하여 파일로 제출 (부득이한 경우 수기 작성 제출)
재외 공관	신청서 접수	공관은 단체가 제출한 서류 접수
	신청서확인 및 의견작성	지원신청서 접수마감 후 공관 의견작성
	의견확정 및 전문통보 (공관의견 제출기간)	전문으로 공관의견 송부
재단	심 의 (익년도3~4월)	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(1, 2차 심의)
	심의결과 전문통보 (익년도3~5월)	심의위원회 개최 후 전문으로 심의결과 송부
동포 단체	결과보고서 제출 (각 사업 종료 60일 이내)	지원단체는 해당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, 관할 공관을 통해 재단에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관은 접수된 결과보고서와 공관의 자체 평가서를 재단으로 제출 결과보고서 미제출 단체는 익년도 지원 제외 및 필요시 지원금 환수 조치

※ 단, 사업별로 심의결과 안내 및 지원금 송금 등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